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05.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1. 04. 29. 임준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 04. 3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611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천구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선물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5. 1. ~ 2021. 5. 5.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출산축하선물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선물의 내용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어 가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서울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종로구 아기탄생 축하 나무심기 사업, 동대문구 5만원 상당의 용품 지급, 충청북도 음성군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탑재된 미아방지 팔지 지급함.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